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가스요금(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기획예산실장,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문화행정계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서울특별시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학생수 60명 미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
- 2.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p>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p> <p>4.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p> <p>②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p> <p>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5항”을 “영 제5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를 “당선자로 하고,”로 한다.</p> <p>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교규정의 제·개정 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심의 요청한 사항 <p>②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제3항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p> <p>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장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의 2를 삭제한다.</p> <p>안 【별표1】 중 학원시설 규모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생활편익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를 초과할 수 없다”</p> <p>안 【별표2】 중 3.자동차운전 가.기능교습장부지(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종 대형반 병행시는 3,000㎡이상, 레이커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2,332㎡ 이상, 트레일러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617㎡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반 병행시는 1,000㎡ 이상 부지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제5조제2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부제내 각 단위 교습 시간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p> <p>제7조의 제목 “(과외교습소의 부제운영)”을 “교습소의 부제운영”으로 한다.</p> <p>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진행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